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북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양인철

전화 02-3399-4866

보도자료

2021. 4. 27.(화)

제 목

김태현 살인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※ 2021. 4. 26.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금일(4. 27.)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(형사2부, 부장검사 임종필)는,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'스토킹'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, 피해자의 여동생 및 모친을 살해한 피고인 김태현을 살인, 절도, 특수주거침입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,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은 피고인 등에 대한 보완조사, 디지털포렌식,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규명하고, 범행 동기,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음
- 한편, 초동 단계에서부터 노원경찰서와 강력범죄전담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며, 송치 즉시 유족에 대한 피해자지원 절차를 개시하여 장례비 및 유족구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음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

- 김태현(24세, 식당 종업원)

② 공소사실 요지

- '20. 11.경부터 온라인게임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가 '21. 1. 23.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, '21. 1. 24.부터 '21. 2. 7.까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공중전화, 타인 명의 휴대전화, 채팅어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접근 시도 및 반복적 연락 **【경범죄처벌법위반】**
- 피해자 A가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락 시도를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 A 등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, '21. 3. 20.경 피고인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절취하고, '21. 3. 23. 17:25경 피해자 A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절취 **【절도】**
- '21. 3. 23. 17:40경 피해자 A의 집에 찾아가 상품 배달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의 동생인 피해자 B가 문을 열자 칼로 위협하며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B를 살해하고, 22:09경 귀가한 피해자 A의 모친 피해자 C를 살해하고, 이어 23:30경 귀가한 피해자 A를 살해 **【살인, 특수주거침입】**
- '21. 3. 24.경 피해자 A의 SNS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대화 및 친구목록을 삭제 **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】**

2

수사 경과

- 3. 25. 112신고 접수, 피고인 현장에서 발견되어 병원 후송
- 4. 4. 구속(4. 2.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 집행)
- 4. 9. ~ 26. 검찰 송치, 송치 후 보완수사(피고인 및 참고인 등 조사, 통합심리분석, 디지털포렌식 등)
- 4. 27. 구속 기소

①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

- 피고인은 '20. 11.경 온라인게임을 하며 피해자 A를 알게 된 뒤 피해자 A 및 위 게임 관련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피해자 A와 친분을 쌓았음
- 피고인은 '21. 1. 2. 및 같은 달 16. 오프라인에서 피해자 A와 만나 같이 게임을 하면서, 평소 피고인의 게임 관련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친절을 베푸는 피해자 A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됨
 - 그러나 '21. 1. 23. 같이 게임을 한 피해자 A 등 3인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일행들과 무관한 사유로 신경질적인 언행을 하는 등 돌발적 행동을 하여 피해자 A 등 일행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, 회피하였음
- 이후 피고인은 '21. 1. 24. 피해자 A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 A를 기다리다 만나게 되었고, 피해자 A가 연락하지 말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공중전화,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, 이전에 피해자 A와의 연락에 사용하지 않았던 채팅 어플 등 피고인임을 숨길 수 있는 수단을 이용, 피해자 A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였음
 - ※ 피고인은 '21. 2. 7. 평소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 A가 차단하지 않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A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적 메시지("후회할 짓은 하지 말았는데 안타깝다. 잘 살아봐" 등)를 보내며 반감을 표현하였음
-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'21. 2. 8. 전화번호를 변경하기에 이르렀고,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A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음
 -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피해자 A를 살해할 계획이었으므로, 범행에 필요시 가족들도 살해할 계획이었음
 - 피고인은 '21. 3. 19.경 기존에 사용하던 게임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접속, 피해자 A에게 피고인임을 숨기고 접근하여 피해자 A의 동선을 파악하였음

- 또한 피고인의 근무지에 범행일 이후로 휴가를 요청하고, '21. 3. 20.경부터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도구를 절취하였으며, 상품 배달을 가장하기 위한 박스, 범행 후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하였고, '21. 3. 22.경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내역, 연락처 등을 삭제함

※ 피고인은 '20. 12.경 피해자 A가 '택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게임을 같이 못 한다'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보낸 택배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통해 이미 피해자 A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

- 피고인은 범행 당일(3. 23.) 17:35경 피해자 A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상품 배달 사실을 알리고 박스를 문 앞에 내려놓은 뒤, 약 5분 뒤 피해자 A의 동생인 피해자 B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 B를 칼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가 피해자 B를 살해하였음

- 이후 같은 날 22:06경 귀가한 피해자 A의 모친인 피해자 C를 살해하고, 이어 23:30경 귀가한 피해자 A를 살해하였음

※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이고, 피고인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 관련 내용을 검색

② 피고인의 성향 및 행적 관련 확인 내용

-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련자들에 대한 보완조사 및 통합심리분석, 전문수사 자문위원 자문, 추가적인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성향 및 행적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

- 통합심리분석 결과, 피고인의 범행 방법,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음

- 다만 통합심리분석 및 자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낮은 자존감과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, 과도한 집착, 피해의식적 사고, 보복심리 등을 가진 자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

-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경우 일순간에 강렬한 분노감이 쉽게 발현되는 양극단적인 대인관계 패턴(집착-통제-폭발행동의 반복)을 보임

※ 통합심리분석 결과 또한 경찰의 PCL-R 평가 결과와 같이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나 '사이코패스'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됨

- 피고인 및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총 16대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재차 진행하여 분석하였음
- 피해자 A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PC에서, 피해자 A가 '21. 1. 24. 피고인에게 '다시는 찾아오지 말라'는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, '21. 2. 7.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"후회할 짓은 하지 말았는데 안타깝다. 잘 살아봐"라는 내용과 욕설이 포함된 위협적인 메시지를 추가로 발견하였음
-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고, 피해자 A의 SNS에 수회 접속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탐색한 후 대화내역 및 친구목록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함
- ※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살해하기 전 피해자를 위협하여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냈음

3 기타사항

-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앞에 찾아가고 반복하여 연락을 한 행위는 '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' 상 '스토킹범죄'에 해당됨
- 단, 위 법안은 '21. 3. 24. 국회의결, '21. 4. 20. 공포 후 '21. 10. 21. 시행 예정으로 본건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만 의율함

4 피해자지원

- 검찰은 사건 송치 전 장례비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'21. 4. 9. 유족에게 장례비 1,200만 원을 지급하였고,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개최하여 '21. 4. 23. 유족 구조금 약 6,200만 원을 지급하였음
-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유족 대상 심리치료 및 상속 관련 등 법률지원, 현장정리 지원 등 다각도로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예정임

5 향후 계획

-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☑